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0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7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1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8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2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7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6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7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안호영의원안	1
2. 이용우의원안	6
III . 검토의견	11
1.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11
※ 참고자료	24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24
2.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개요	25
3. 농지보전부담금 개요	27

I. 제안경위

의안번호	법률안명	발의일	회부일	제안자
221385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2025.11.3.	안호영의원 등 13인
221385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21385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56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3.	2025.11.4.	
221427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2025.11.17.	이용우의원 등 10인
221427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7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8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안호영의원안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 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④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2. 이용우의원안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조성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

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안 제37조의2 신설).

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

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개정안은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구역 등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¹⁾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²⁾을 면제(안호영의원안) 또는 감면(이용우의원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안호영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제37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부동산용어사전)

		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제37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제3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9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제27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2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4개 법률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 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해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原水)·정수(淨水)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³⁾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4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부과요율: 170원/톤)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

(이하 “수계관리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 관리,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⁶⁾).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후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4대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⁷⁾.

토지의 매수는 4대강 수계법 시행규칙⁸⁾에 따라 각각 수계별로 정

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참고자료 1.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참조
- 7) <참고자료 2.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개요> 참조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해진 범위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토지등의 매수 범위(4대강 수계법 시행규칙)]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공통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계별	■ 한강·북한강·경안천 경계 1km 이내	■ 낙동강 본류 경계 300m 이내 ■ 제1지류 경계 200m 이내	■ 금강 본류 경계 1km 이내	■ 상수원 댐 및 상류지역 하천 경계 1km 이내 ■ 제1지류 경계 500m 이내

이 중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 경영 이외의 사업(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소유권 이전 이후 1년 이내), 대체농지 조성 등을 위한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⁹⁾.

그런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 결과¹⁰⁾ 기후에너지환경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 가.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9)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는 200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20여 년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고, 현재(‘24년 8월 현재) 까지 농지 전용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을 미납하였으며¹¹⁾, 향후 동 사업을 추진 등을 위해 토지(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¹²⁾.

이와 관련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며,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실시할 수밖에 없으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 조성 목적¹³⁾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10)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점검개요

- (일시·주체) '24. 5 ~ '25. 3(10개월) / 부패예방추진단(부방단)
 - (점검 대상) 유역환경청(4개), 한국환경보전원, 지자체(32개)가 추진 중인 수계관리기금 전체 (단, 여유자금운용,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영비 제외)
 - (점검결과)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 수변생태벨트 조성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 미납)
- ⇒ 사후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지침 개정 등 재발방지책 마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1)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액 922억원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 억원)

구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매수농지	32,982	4,142	11,275	5,223	12,342
부담금(추정)	921	495	188	96	14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경우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토지를 조성·관리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수 토지에 녹지(다년생식물 식재)를 조성하여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또한, 수변 녹지 등 수변생태벨트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¹⁴⁾받고 있는 제방¹⁵⁾, 사방¹⁶⁾ 등과 같이 국토를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국토 보존시설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위해 매수된 토지등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 특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구역 등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계관리기금을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촉진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4)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15)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수자원·물환경 실무용어사전)

16) 산중턱이나 계곡에서 수력이나 풍력에 의해 물, 토립자 등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산사태나 붕괴를 방지하고 토양의 침식작용을 억제하는 시설물(물백과사전)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변경(면제/감면)하는 경우 변경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¹⁷⁾,

부담금의 감면규정은 각 부담금의 근거법령에서 개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리·보전의 공익적 목적,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있으며,

[부담금 감면 관련 유사 입법례]

법 률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 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 권 발전 특별법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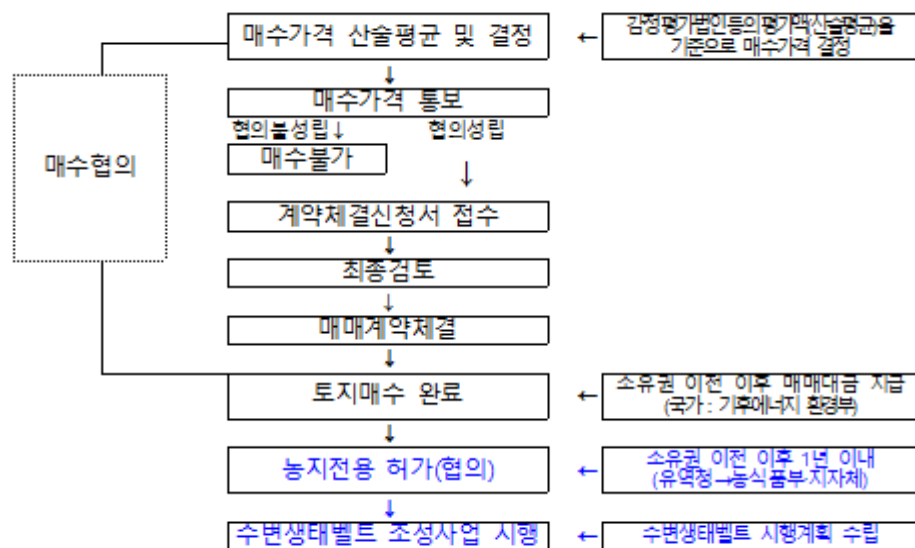
개정안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담금의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담금(신설·변경 등)의 총괄 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와 「농지법」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농지법 시행령」(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개정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제도 취지(농지감소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를 고려할 때 타법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도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부담금 기본법」에 따라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부담금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안호영의원안, 이용우의원안)은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지전용허가신청과 부담금부과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대강 수계법에 따른 토지등 매수¹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토지등 매수 후 해당 토지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중임¹⁹⁾.

[토지매수절차도(매수협의 이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9) 세부사업명: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한강(1334-302), 낙동강(1337-302), 금강(1340-302), 영산강·섬진강(1343-302)]

이에 4대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등 토지등 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실제 시행 절차를 반영하여 개정안의 문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중 일부만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수변녹지조성사업)으로 활용되고, 상당 부분의 토지가 미조성지로 남아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강수계의 매수토지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총 매수토지 16,593천㎡ 중 6,575천㎡(39.6%)만 수변녹지로 조성되었으며, '24년 말 현재 10,018천㎡(60.4%)는 미조성지로,

[2020년~2024년, 한강수계 매수토지 및 수변녹지 조성 현황]

(‘24년말 기준, 단위: 천㎡, 백만원)

구분		계	'0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매수 토지	면적	16,593	14,797	490	341	555	262	148
	금액	1,839,770	1,430,841	89,968	91,363	72,349	78,561	76,668
수변 녹지	면적	6,587	4,506	416	367	385	503	398
	금액	88,638	62,387	5,630	5,002	3,587	4,976	7,05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예산 설명자료)

수변생태벨트 조성없이 토지 매수 후 보유만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담금 감면이 필요한지 여부와 감면이 필요하다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활용되는 토지와 같은 비율로 감면이 필요한지,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는 불가하며, 「농지법 시행령」의 공공용시설에 해당²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50%의 감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²¹⁾,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안호영의원안) 부칙 제2조는 본문 개정규정²²⁾이 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소급효를 규정하여, 개정안 시행 전까지 미납된 농지전용부담금('24.8월 기준, 922억원)에 대해서도 부과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데²³⁾,

이와 같은 시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재량²⁴⁾사항으로,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 소급효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개정안의 입법목적, 개정이유 등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²⁵⁾²⁶⁾.

20)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21) 수변생태벨트 부담금 면제 추진계획(안), 물환경정책과, 2025. 8. 28

22) 한강수계법안 제27조의2, 낙동강수계법안 제39조의2, 금강수계법안 제37조의2, 영·섬수계법안 제37조의2

2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매수한 농지 3,298만 2,000에 대해 현재('25년 말)까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현행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921억원(추정치)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4)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69, 2012. 8. 23)

25)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이 명백하고, (중략) 이것은 재정경제정책의 필요에 수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81누423, 1983. 4. 26)

다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된 토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 또한 이미 발생하였는 바, 이를 사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²⁷⁾²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26)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7) 수변생태벨트 부담금 면제 추진계획(안), 물환경정책과, 2025. 8. 28

28)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부칙 적용례를 통한 소급입법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해서도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26. 1. 23)

참고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²⁹⁾

①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① 개요	▶ 상류지역 규제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 주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 *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부과요율 : 170원/톤)												
② 체계	▶ '02년(한강수계 '99년)부터 4대강수계법*에 따라 4대강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운용 중 * ①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결정 및 의결사항은 사전에 상·하류 지자체의 우선 합의 이후에 수계실무위, 수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③ 재원	▶ 물이용부담금, 매수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 등의 매도금액,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일시차입금 등 * '24년까지 물이용부담금과 재산수입 등 총 21조 8,453억원(한강 약 12.3조, 낙동강 약 4.9조, 금강 약 2.5조, 영산강 약 2.1조)												
④ 규모 ('25년)	(단위 : 억원) <table><tr><th>수계별</th><th>총계</th><th>한강</th><th>낙동강</th><th>금강</th><th>영산강</th></tr><tr><td>기금 규모</td><td>11,607</td><td>5,626</td><td>2,376</td><td>1,908</td><td>1,697</td></tr></table>	수계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기금 규모	11,607	5,626	2,376	1,908	1,697
수계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기금 규모	11,607	5,626	2,376	1,908	1,697								
⑤ 기금 용도	▶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2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재원 : 물이용부담금

구분	내용																																				
① 기본개념	▶ 상류지역 규제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 주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																																				
② 부과대상	▶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정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 ▶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③ 면제대상	▶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측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④ 부과·징수 방법	▶ (부과금 산정) - 물사용량(취수량) × 부과요율(170원/톤) ▶ (부과 방법) -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 후 수계위 납입 - 전용수도 설치자·하천수 사용자 : 수계위에서 부과·징수																																				
⑤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tr><th>수 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tr><td>합 계</td><td>905,577</td><td>918,670</td><td>921,969</td><td>931,547</td><td>938,396</td></tr><tr><td>한 강</td><td>476,702</td><td>476,342</td><td>473,639</td><td>478,841</td><td>484,370</td></tr><tr><td>낙동강</td><td>221,991</td><td>222,768</td><td>226,987</td><td>234,932</td><td>230,395</td></tr><tr><td>금 강</td><td>120,206</td><td>127,157</td><td>127,682</td><td>127,458</td><td>129,833</td></tr><tr><td>영산강</td><td>86,678</td><td>92,403</td><td>93,661</td><td>90,316</td><td>93,798</td></tr></table>	수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05,577	918,670	921,969	931,547	938,396	한 강	476,702	476,342	473,639	478,841	484,370	낙동강	221,991	222,768	226,987	234,932	230,395	금 강	120,206	127,157	127,682	127,458	129,833	영산강	86,678	92,403	93,661	90,316	93,798
수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05,577	918,670	921,969	931,547	938,396																																
한 강	476,702	476,342	473,639	478,841	484,370																																
낙동강	221,991	222,768	226,987	234,932	230,395																																
금 강	120,206	127,157	127,682	127,458	129,833																																
영산강	86,678	92,403	93,661	90,316	93,798																																

참고 2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개요³⁰⁾

□ 사업 목적

- (토지등의 매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매수하여 오염원 제거 및 입지 사전 차단하고,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해소
- (수변생태벨트조성) 매수한 토지에 숲형, 습지형, 초지형, 자연림 복원 등 수변녹지 조성을 통한 자연정화기능 증대로 상수원 수질개선 및 건강한 생태계 복원 기여

□ 사업 내용

- 매수 범위 내 매도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으로부터 거리, 규제지역 여부,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매수 추진

< 토지등의 매수 범위 >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공통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계별	■ 한강·북한강·경안천 경계 1km 이내	■ 낙동강 본류 경계 300m 이내 ■ 제1지류 경계 200m 이내	■ 금강 본류 경계 1km 이내	■ 상수원 댐 및 상류지역 하천 경계 1km 이내 ■ 제1지류 경계 500m 이내

- 매수 토지별 복원·보전·향상 등 관리 방향에 따라 복원 추진

□ '25년 예산 : 4대강 전체 190,2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계	190,266	90,807	37,336	22,600	39,523
토지등의 매수	135,479	72,986	24,500	14,654	23,339
수변녹지조성사업	54,787	17,821	12,836	7,946	16,184



<사업 前 : 농지>



<사업 後 : 자연 복원>

3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3

농지보전부담금 개요³¹⁾

구분	내용																																																																																																						
① 부과근거	▶ 농지법(제38조제1항 및 제7항)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규정,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② 부과목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임																																																																																																						
③ 부과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농지법 제38조제1항)																																																																																																						
④ 산정기준	▶ 산정기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산출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 5만원/㎡)																																																																																																						
⑤ 감면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중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연 도</th><th colspan="2">부 과</th><th colspan="2">징 수^{주1)}</th><th colspan="2">차 이^{주2)}</th><th rowspan="2">징수율</th></tr><tr><th>건수</th><th>금액(A)</th><th>건수</th><th>금액(B)</th><th>건수</th><th>금액(A-B)</th></tr><tr><td>합계</td><td>1,443,972</td><td>27,256,960</td><td>1,253,588</td><td>24,380,269</td><td>190,384</td><td>2,876,691</td><td>89.4</td></tr><tr><td>2023</td><td>57,958</td><td>1,073,068</td><td>46,433</td><td>1,072,091</td><td>11,525</td><td>977</td><td>99.9</td></tr><tr><td>2022</td><td>72,183</td><td>1,425,248</td><td>57,819</td><td>1,331,230</td><td>14,364</td><td>94,018</td><td>93.4</td></tr><tr><td>2021</td><td>78,918</td><td>2,111,498</td><td>60,898</td><td>1,596,314</td><td>18,020</td><td>515,184</td><td>75.6</td></tr><tr><td>2020</td><td>68,283</td><td>1,193,701</td><td>53,188</td><td>1,179,667</td><td>15,095</td><td>14,034</td><td>98.8</td></tr><tr><td>2019</td><td>68,787</td><td>1,296,055</td><td>54,433</td><td>1,174,629</td><td>14,354</td><td>121,426</td><td>90.6</td></tr><tr><td>2018</td><td>82,543</td><td>1,282,433</td><td>65,932</td><td>1,397,771</td><td>16,611</td><td>△115,338</td><td>109.0</td></tr><tr><td>2017</td><td>81,071</td><td>1,387,020</td><td>63,675</td><td>1,203,310</td><td>17,396</td><td>183,710</td><td>86.8</td></tr><tr><td>2016</td><td>72,852</td><td>1,438,567</td><td>60,788</td><td>1,260,884</td><td>12,064</td><td>177,683</td><td>87.6</td></tr><tr><td>2015</td><td>63,015</td><td>943,780</td><td>52,417</td><td>1,100,019</td><td>10,598</td><td>△156,239</td><td>116.6</td></tr><tr><td>2014이전</td><td>798,362</td><td>15,105,590</td><td>738,005</td><td>13,064,354</td><td>60,357</td><td>2,041,236</td><td>86.5</td></tr></table> 주1) 채납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은 미포함 주2) 납부지연(채납)·분할납부에 따른 기한미도래 등	연 도	부 과		징 수 ^{주1)}		차 이 ^{주2)}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443,972	27,256,960	1,253,588	24,380,269	190,384	2,876,691	89.4	2023	57,958	1,073,068	46,433	1,072,091	11,525	977	99.9	2022	72,183	1,425,248	57,819	1,331,230	14,364	94,018	93.4	2021	78,918	2,111,498	60,898	1,596,314	18,020	515,184	75.6	2020	68,283	1,193,701	53,188	1,179,667	15,095	14,034	98.8	2019	68,787	1,296,055	54,433	1,174,629	14,354	121,426	90.6	2018	82,543	1,282,433	65,932	1,397,771	16,611	△115,338	109.0	2017	81,071	1,387,020	63,675	1,203,310	17,396	183,710	86.8	2016	72,852	1,438,567	60,788	1,260,884	12,064	177,683	87.6	2015	63,015	943,780	52,417	1,100,019	10,598	△156,239	116.6	2014이전	798,362	15,105,590	738,005	13,064,354	60,357	2,041,236	86.5
연 도	부 과		징 수 ^{주1)}		차 이 ^{주2)}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443,972	27,256,960	1,253,588	24,380,269	190,384	2,876,691	89.4																																																																																																
2023	57,958	1,073,068	46,433	1,072,091	11,525	977	99.9																																																																																																
2022	72,183	1,425,248	57,819	1,331,230	14,364	94,018	93.4																																																																																																
2021	78,918	2,111,498	60,898	1,596,314	18,020	515,184	75.6																																																																																																
2020	68,283	1,193,701	53,188	1,179,667	15,095	14,034	98.8																																																																																																
2019	68,787	1,296,055	54,433	1,174,629	14,354	121,426	90.6																																																																																																
2018	82,543	1,282,433	65,932	1,397,771	16,611	△115,338	109.0																																																																																																
2017	81,071	1,387,020	63,675	1,203,310	17,396	183,710	86.8																																																																																																
2016	72,852	1,438,567	60,788	1,260,884	12,064	177,683	87.6																																																																																																
2015	63,015	943,780	52,417	1,100,019	10,598	△156,239	116.6																																																																																																
2014이전	798,362	15,105,590	738,005	13,064,354	60,357	2,041,236	86.5																																																																																																

31) 자료: 기획재정부(2024년도 부담금 평가)